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안 건 번호	2024-1
-----------	--------

발의년월일: 2024. 4. 1.

제안자: 학교장

담당자: 한정선

1. 제안 사유

갈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거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내실 있는 단위학교의 자치 기구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근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갈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4조(임원)

나. 구성 및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선출방법: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정(안)

안건 번호	2024-2
----------	--------

제출일자: 2024. 3. 14.

제 출 자: 학 교 장

담 당 자: 최 유 진

1. 제안이유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목표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 재량휴업일 지정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및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시수 변경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변경 운영.

2. 주요내용

- 학사일정 및 수업일수
 - 10월 1일(화) 재량휴업일, 2월 14일(금) 졸업식 및 종업식
- 학교행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운영계획
 - 5월 1일(수) 에코드림현장체험, 5월 24일(금) 에코드림 교육공동체행사, 6월 21일(금) 스포츠현장체험, 9월 26일(금) 다꿈현장체험 등 학교행사 변경.추가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 무용동아리 시수변경 등

붙임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정 내용(안) 1부. 끝.

[붙임]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정(안)

1 학사일정 및 수업일수

2024학년도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금 삼일절	1	월 예술교육-무용	1	수 에코드림현장체험	1	토	1	월 예술교육-무용	1	목
2	토	2	화	2	목 스포츠락-탁구	2	일	2	화	2	금
3	일	3	수 다모임	3	금	3	월 예술교육-무용	3	수 보건순회교육	3	토
4	월 시업식	4	목 스포츠락-탁구 집단상담(4-6)	4	토	4	화	4	목	4	일
5	화	5	금	5	일	5	수	5	금	5	월
6	수	6	토	6	월 대체공휴일	6	목 현충일	6	토	6	화
7	목	7	일	7	화	7	금	7	일	7	수
8	금	8	월 예술교육-무용	8	수 다모임	8	토	8	월 예술교육-무용 식생활교육(3)	8	목
9	토	9	화 보건순회교육	9	목 스포츠락-탁구	9	일	9	화 식생활교육(2)	9	금
10	일	10	수 22대국회의원선거	10	금	10	월 예술교육-무용	10	수 식생활교육(4)	10	토
11	월 예술교육-무용	11	목 스포츠락-탁구 집단상담(4-6)	11	토	11	화	11	목 식생활교육(5)	11	일
12	화	12	금	12	일 개교기념일	12	수 보건순회교육	12	금 식생활교육(6)	12	월
13	수	13	토	13	월 영어체험학습(5,6)	13	목 스포츠락-탁구	13	토	13	화
14	목	14	일	14	화 영어체험학습(5,6)	14	금	14	일	14	수
15	금	15	월 예술교육-무용	15	수 부처님오신날	15	토	15	월 예술교육-무용	15	목 광복절
16	토	16	화	16	목 영어체험학습(5,6)	16	일	16	화	16	금
17	일	17	수 이음프로젝트(5,6) 다모임	17	금 영어체험학습(5,6)	17	월 예술교육-무용	17	수 교육과정워크숍	17	토
18	월 기초학력진단주간 예술교육-무용	18	목 스포츠락-탁구 집단상담(4-6)	18	토	18	화 수상안전교육(3,4)	18	목	18	일
19	화	19	금 장애인식개선교육	19	일	19	수 수상안전교육(3,4)	19	금	19	월
20	수 보건순회교육 교육과정설명회	20	토	20	월 예술교육-무용	20	목 수상안전교육(3,4)	20	토	20	화
21	목	21	일	21	화	21	금 스포츠현장체험	21	일	21	수
22	금	22	월 예술교육-무용	22	수 보건순회교육 소방훈련(자체)	22	토	22	월 예술교육-무용	22	목
23	토	23	화	23	목 스포츠락-탁구	23	일	23	화	23	금
24	일	24	수 다모임	24	금 에코드림 교육공동체행사 및 학부모참여수업	24	월 예술교육-무용	24	수 보건순회교육	24	토
25	월 예술교육-무용	25	목 스포츠락-탁구 집단상담(4-6)	25	토	25	화	25	목 여름방학식	25	일
26	화	26	금 다모임 환경정화활동	26	일	26	수	26	금	26	월
27	수 다모임	27	토	27	월 예술교육-무용	27	목 스포츠락-탁구	27	토	27	화
28	목	28	일	28	화	28	금	28	일	28	수
29	금	29	월 예술교육-무용	29	수 학교폭력예방교육	29	토	29	월	29	목 여름개학식
30	토	30	화 보건순회교육	30	목 119안전체험학습(2,5)	30	일	30	화	30	금
31	일			31	금 도서관체험학습(2,3)			31	수	31	토
수업 일수	20		21		21		19		19		2

2024학년도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일		1 화	재량휴업일	1 금	에코드림현장체험	1 일		1 수	신정	1 토	
2 월	스포츠락-미술	2 수	다모임	2 토		2 월		2 목		2 일	
3 화		3 목	개천절	3 일		3 화		3 금		3 월	겨울개학식
4 수		4 금	장애인식개선교육(3)	4 월	영어체험학습(3,4)	4 수	다모임	4 토		4 화	
5 목	스포츠락-탁구	5 토		5 화	영어체험학습(3,4)	5 목		5 일		5 수	
6 금		6 일		6 수	영어체험학습(3,4)	6 금		6 월		6 목	
7 토		7 월	스포츠락-미술 장애인식개선교육(4)	7 목	영어체험학습(3,4)	7 토		7 화		7 금	
8 일		8 화	장애인식개선교육(2)	8 금	6학년현장체험(6)	8 일		8 수		8 토	
9 월	스포츠락-미술 식생활교육(3)	9 수	한글날	9 토		9 월		9 목		9 일	
10 화	식생활교육(2)	10 목	스포츠락-탁구 장애인식개선교육(5)	10 일		10 화		10 금		10 월	
11 수	식생활교육(4)	11 금	장애인식개선교육(6)	11 월	수업나눔주간 스포츠락-미술	11 수	교육과정워크숍	11 토		11 화	
12 목	스포츠락-탁구 식생활교육(5)	12 토		12 화		12 목	교육과정워크숍	12 일		12 수	
13 금	식생활교육(6)	13 일		13 수		13 금		13 월		13 목	
14 토		14 월	스포츠락-미술	14 목	스포츠락-탁구	14 토		14 화		14 금	졸업식 및 종업식
15 일		15 화		15 금		15 일		15 수		15 토	
16 월	추석연휴	16 수	다모임	16 토		16 월		16 목		16 일	
17 화	추석	17 목	스포츠락-탁구	17 일		17 화		17 금		17 월	
18 수	추석연휴	18 금	다모임 어울림미당	18 월	스포츠락-미술	18 수	가정폭력예방교육	18 토		18 화	
19 목	스포츠락-탁구	19 토		19 화		19 목		19 일		19 수	
20 금	이음프로젝트(5-6)	20 일		20 수	학부모 연수	20 금		20 월		20 목	
21 토		21 월	스포츠락-미술	21 목	스포츠락-탁구	21 토		21 화		21 금	
22 일		22 화		22 금		22 일		22 수		22 토	
23 월	스포츠락-미술	23 수	소방훈련(합동)	23 토		23 월		23 목		23 일	
24 화		24 목	스포츠락-탁구	24 일		24 화		24 금		24 월	
25 수	다모임	25 금		25 월	스포츠락-미술	25 수	성탄절	25 토		25 화	
26 목	다꿈현장체험	26 토		26 화		26 목		26 일		26 수	
27 금		27 일		27 수	다모임	27 금	겨울방학식	27 월		27 목	
28 토		28 월	스포츠락-미술	28 목	스포츠락-탁구	28 토		28 화	설연휴	28 금	
29 일		29 화		29 금		29 일		29 수	설날		
30 월	스포츠락-미술	30 수	학교폭력예방교육	30 토		30 월		30 목	설연휴		
		31 목	스포츠락-탁구			31 화		31 금			
수업 일수	18		20		21		19		0		10
※수업일수(190일) : 1학기 100일(2024.3.1.~8.28.) + 2학기 90일(2024.8.29.~2025.2.28.)											

2

학교행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운영계획

2024학년도 1학기

순	행사명	날짜(요일)	대상	교시						시 수							
				1	2	3	4	5	6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	
				창(자)							자	동	봉	진	안		
1	시업식	3.4(월)	전학년	창(자)	1	1
2	다모임	3.27(수)	전학년	창(자)	.	.	.	1	1
3		4.3(수)	전학년	창(자)	.	.	.	1	1
4		4.17(수)	전학년	창(자)	.	.	.	1	1
5	이음프로젝트	4.17(수)	5,6학년	사회	사회	사회	사회	.	.	.	4	4
6	장애인식개선교육	4.19(금)	2학년	.	.	.	창(자)	1	1
7			3,4,5,6학년	창(자)	1
8	다모임	4.24(수)	전학년	창(자)	.	.	.	1	1
9	다모임 환경정화활동	4.26(금)	전학년	창(봉)	창(봉)	창(봉)	창(봉)	4	.	.	.	4
10	에코드림현장체험	5.1(수)	전학년	창(자)	창(자)	창(자)	창(자)	창(자)	창(자)	.	.	6	6
11	다모임	5.8(수)	전학년	창(자)	.	.	.	1	1
12	영어체험학습	5.13(월)	5,6학년	영어	영어	영어	미술	미술	미술	6
13		5.14(화)	5,6학년	영어	영어	실과	체육	체육	체육	6
14		5.16(목)	5,6학년	영어	영어	실과	실과	실과	실과	6
15		5.17(금)	5,6학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6	.	.	6
16	소방훈련	5.22(수)	전학년	창(자)	.	.	.	1	1
17	에코드림 교육공동체행사	5.24(금)	전학년	체(즐)	체(즐)	과(슬)	과(슬)	사(슬)	사(슬)	6
18	학교폭력예방교육	5.29(수)	전학년	창(자)	.	.	.	1	1
19	119안전체험학습	5.30(목)	2,5학년	체(즐)	체(즐)	체(즐)	체(즐)	4	4
20	도서관체험학습	5.31(금)	2,3,4학년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국어	6
21	수상안전교육	6.18(화)	3,4학년	체육	체육	체육	체육	4	4
22		6.19(수)	3,4학년	체육	체육	체육	체육	4	4
23		6.20(목)	3,4학년	체육	체육	체육	체육	4	4
24	스포츠현장체험	6.21(금)	전학년	체(즐)	체(즐)	도(바)	도(바)	사(슬)	사(슬)	6
25	식생활교육	7.8(월)	3학년	창(자)	.	.	.	1	1
26		7.9(화)	2학년	창(자)	.	.	.	1	1
27		7.10(수)	4학년	창(자)	.	.	.	1	1
28		7.11(목)	5학년	창(자)	.	.	.	1	1
29		7.12(금)	6학년	창(자)	.	.	.	1	1
30	여름방학식	7.25(목)	전학년	.	.	창(자)	1	1

순	행사명	날짜(요일)	대상	교시						시 수							
				1	2	3	4	5	6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	
											자	동	봉	진	안		
1	여름개학식	8.29(목)	전학년	창(자)	1	1
2	식생활교육	9.9(월)	3학년	창(자)	.	.	1	1	
3		9.10(화)	2학년	창(자)	.	.	1	1	
4		9.11(수)	4학년	창(자)	.	.	1	1	
5		9.12(목)	5학년	창(자)	.	.	1	1	
6		9.13(금)	6학년	창(자)	.	.	1	1	
7	이음프로젝트	9.20(금)	5,6학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6	.	6	
8	다모임	9.25(수)	전학년	창(자)	.	.	1	1	
9	다꿈현장체험	9.26(목)	전학년	창(자)	창(자)	창(진)	창(진)	창(진)	창(진)	.	2	.	.	4	.	6	
10	다모임	10.2(수)	전학년	창(자)	.	.	1	1	
11	장애인식개선교육	10.4(금)	3학년	창(자)	.	.	1	1	
12	장애인식개선교육	10.7(월)	4학년	창(자)	.	.	1	1	
13	장애인식개선교육	10.8(화)	2학년	창(자)	.	.	1	1	
14	장애인식개선교육	10.10(목)	5학년	창(자)	.	.	1	1	
15	장애인식개선교육	10.11(금)	6학년	창(자)	.	.	1	1	
16	다모임	10.16(수)	전학년	창(자)	.	.	1	1	
17	다모임 어울림한마당	10.18(금)	전학년	창(자)	창(자)	창(자)	창(자)	.	.	.	4	4	
18	소방훈련	10.23(수)	전학년	창(자)	.	.	1	1	
19	학교폭력예방교육	10.30(수)	전학년	창(자)	.	.	1	1	
20	에코드림현장체험	11.1(금)	전학년	과(술)	과(술)	과(술)	국어	국어	국어	6	6	
21	영어체험학습	11.4(월)	3,4학년	영어	영어	미술	미술	미술	미술	6	6	
22		11.5(화)	3,4학년	영어	영어	체육	체육	체육	체육	6	6	
23		11.6(수)	3,4학년	영어	영어	사회	사회	사회	사회	6	6	
24		11.7(목)	3,4학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창(진)	6	.	6	
25	6학년현장체험	11.8(금)	6학년	사회	사회	사회	체육	체육	체육	6	6	
26	다모임	11.27(수)	전학년	창(자)	.	.	1	1	
27	다모임	12.4(수)	전학년	창(자)	.	.	1	1	
28	가정폭력예방교육	12.18(수)	전학년	창(자)	.	.	1	1	
29	겨울방학식	12.27(금)	전학년	.	.	창(자)	1	1	
30	겨울개학식	2.3(월)	전학년	창(자)	1	1	
31	졸업식 및 종업식	2.14(금)	전학년	.	.	창(자)	1	1	

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영역		활동			시수							
1~2 학년	3~6 학년	1~2학년	3~6학년		1학년		2학년		3~4학년		5~6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자율· 자치 활동	자 활 동	자치활동	다모임	자치 적응	5	5	5	5	5	5	5	5
					34	0	0	0	0	0	0	0
		자율활동	의식행사		2	4	2	4	2	4	2	4
			장애인식 개선교육		1	1	1	1	1	1	1	1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1	1	1	1	1	1	1	1
			학교폭력예방교육		1	1	1	1	1	1	1	1
			가정폭력예방교육		0	1	0	1	0	1	0	1
			소방훈련		1	1	1	1	1	1	1	1
			다문화이해교육(다꿈)		0	2	0	2	0	2	0	2
			에코드림현장학습		6	0	6	0	6	0	6	0
			다모임 어울림한마당		0	4	0	4	0	4	0	4
			행복한 스포츠락		4	18	9	18	9	18	9	18
		자율(자치) 활동 계					55	38	26	38	26	38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학술·문화 및 여가활동	무용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4	14	24	0	18	0	18	0
	봉사 활동	봉사활동	다모임 환경정화활동	환경 보호 활동	4	0	4	0	4	0	4	0
진로 활동	진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자기이해활동(2,3,4) 이음프로젝트(5,6)	자기 이해 활동	0	0	0	6	6	0	0	6
			다꿈 현장체험 영어체험학습(3,4,5,6)	진로 탐색 활동	0	4	0	4	0	10	6	4
학기계					63	56	54	48	54	48	54	48
총 계					119		102		102		102	

※1~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3~6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안)

안전 번호	2024-3
----------	--------

제출일자: 2024. 3. 25.
제 출 자: 학 교 장
담 당 자: 최 유 진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제1항6호
-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2. 제안이유

-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3.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요 내용

가. 목적

- 1)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삶의 기초역량 형성
- 3) 전문성 있는 내부강사(교사)를 활용한 학습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 4) 학생의 교과별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외부강사 제공으로 맞춤형 학습 집중지원
- 5) 다각적인 기초학력 부진 원인 해소를 위한 심층지원(난독·경계선지능 등) 대상학생의 전문기관 중재 지원

나. 개요

- 1) 사 업 명: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두드림학교)
- 2) 운영기간: 2024년 4월 ~ 2024년 11월, 총 8개월간
- 3) 운영내용: 1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수강료,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없음)
- 4) 운영시간: 학기 중 월~금 학습지원 14:00~15:30

※운영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운영장소: 각급교실, 특별실 및 기타 유휴 교실 활용

- 6) 운영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교육결손이 있는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선정(보호자 동의 후 지원)
- 7) 소요예산: 금4,560,000원
- 8) 계약방법: 개인위탁 강사 계약(외부 강사 계약 시 전북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준용)

다. 세부 운영 계획

1)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운영

- 가) 학생, 보호자, 교사 의견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보장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면밀한 진단 및 향상도 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구성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주요사항(학생 선정 및 지원 방안)을 결정
 - 학생·교사·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현직 교원은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 학기 중 주 15시간 이내에서 운영 가능

나) 프로그램 안내 및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 프로그램은 학기초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 방안을 계획·안내하여 보호자의 동의 후 실시함
- 한 프로그램당 대상 학생은 1~2명으로 학생·교사·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직하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의 향상도 결과에 따라 다른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교육결손이 있는 학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생의 향상도 결과에 따라 다른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교육결손이 있는 학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 개요

순	추진내용	기간	세부 행정업무
1	기초학력 진단·통합·심층검사 실시	2024.3. ~2024.4.	- 기초학력 진단·향상도 검사 계획 - 기초학력 진단검사 안내 - 기초학력 진단·통합검사 준비 및 실시
2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 수립	2024.3. ~2024.4.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계획

3	1학기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4.3. ~2024.7.	-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보호자 신청 및 동의서 - 대상 학생 확정 - 1차 향상도검사 및 결과 안내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 이력관리 - 매월 결재서류 및 청구서류 제출
4	2학기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2024.8. ~2024.11.	- 2·3차 향상도검사 및 결과 안내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 이력관리 - 매월 결재서류 및 청구서류 제출
4	연간 운영 마무리	2024.12.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회의

※ 주요 추진내용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라. 프로그램 운영 내용

- 1)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두드림 학교) 사업에 해당하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 2) 프로그램 운영 수: 1개 프로그램 운영(예정)

※ 2024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교육결손이 있는 학생 현황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결정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학생 수	운영기간	주당시수	비고
	학년	교과				
1	6학년	수학, 영어	1	연중	3	기본교재: 늘품이 (응용교육측정 평가연구소) * 교사 자율적으로 보조교재 활용 가능 * 강사는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교재 활용 가능

※ 학생·교사·학교의 사정에 따라 운영 횟수 및 요일이 변동될 수 있음

마.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회계관리

- 1) 교육청 교부금을 지원받아 학생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 2) 교재 및 재료 등 지도에 필요한 물품은 학교에서 지원
- 3)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예산 편성 기준을 바탕으로 집행

- 운영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교재·교구 구입비, 재료 구입비, 간식비 등 지원 가능
- 시간당(40분 기준) 강사료는 내부강사 30,000원 이내, 외부 강사는 35,000원
- 농산어촌 지역은 강사비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지급 가능

바. 보호자 안내 및 평가 계획

- 1) 보호자 안내는 가정통신문, 보호자 동의서 등을 활용
- 2) 학교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에 따라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성장 이력을 관리
- 3) 학생의 학습지원 학습 상황에 대해 강사들이 보호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활발히 소통
- 4) 교육부 성과지표에 따른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

사. 학생 안전관리 계획

- 1) (출결관리) 지도교(강)사는 학생들의 결시 및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함
- 2) (생활지도) 프로그램 참여 시 수업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로 지도함
- 3)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귀가 지도를 실시
 - 가)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함
 - 나) 직사광선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 오존 경보 발령, 태풍, 집중호우, 폭한, 폭설 등 기타 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함
 - 다) 태풍, 지진,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교육청 지침 및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 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보호자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함
 - 라) 학교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함 (각종 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석면 제거 공사 등)
- 4)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따라 운영함

2024학년도 기초학력 학습지원 교육자료 선정(안)

안건 번호	2024-4
----------	--------

제출일자: 2024. 3. 25.
제출자: 학 교 장
담당자: 최 유 진

1. 제안이유

2024학년도 기초학력 보장 '교육과정 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한 기초학력 학습지원 교육 자료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자료 선정 방향 : 각 학년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선정
나. 학년별 선정 교육자료 목록

학년	교육자료명	권수
2	초능력 수학 구구단	6
3	신사고 썬연산 초등 5권 3-1	3
	신사고 썬연산 초등 6권 3-2	3
	기적의 수학 문장제 3학년 세트	3
	초등학생 반듯한 글씨체 만들기	4
5	신사고 우공비 초등 수학 5-1	1
	신사고 우공비 초등 수학 5-2	1
6	바쁜 3,4학년을 위한 빠른 덧셈	1
	바쁜 3,4학년을 위한 빠른 뺄셈	1
	바쁜 3,4학년을 위한 빠른 곱셈	1
	바쁜 3,4학년을 위한 빠른 나눗셈	1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구구단	1
	그만 틀리고 싶은 초등 고학년 맞춤법	3
	기적의 받아쓰기 세트	1
	기적의 계산법 4학년 세트	1
	기적의 수학 문장제 4학년 세트	1
	기적의 수학 문장제 5학년 세트	2
기적의 수학 문장제 6학년 세트	2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

안건 번호	2024-5
----------	--------

제출일자: 2024. 3. 28.
제 출 자: 학 교 장
담 당 자: 박 민 봉

1. 제안이유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20.3.1.시행) 따라 법령에 근거한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입법예고)
 -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주요내용

- 가.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 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안)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가. 전담기구 구성 (법률 제14조 제13항)

- 1) 재구성 이유 : 학부모위원의 자녀 졸업으로 재학 학생 학부모위원 선출 필요
- 2) 전담기구 구성(안) :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보건담당 교사, 학부모위원 2명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1/3 이상 구성)
- 3) 학부모위원 선출 필요 인원: **1명**
- 4)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함.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안)

가. 현 전담기구 구성원

구분	직위	구분	업무
위원장	교감	박인미	*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와 심의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긴밀한 사건처리 * 학교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위원	학교폭력 담당교사	박미나	
위원	보건 담당교사	박민봉	
위원	학부모	이정환	
위원	학부모	보티타오	

나. 2024학년도 전담기구 구성(안)

구분	직위	구분	업무
위원장	교감	박인미	*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와 심의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긴밀한 사건처리 * 학교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등
위원	학교폭력 담당교사	박미나	
위원	보건 담당교사	박민봉	
위원	학부모	이정환	
위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학생의 재학기간 중 유지 가능함.

2024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교재 추가선정(안)

안전 번호	2024-6
----------	--------

제출일자: 2024. 3. 29.
 제출자: 학 교 장
 담당자: 유영민, 박경임

1. 제안이유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자료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별 교육자료 선정

가. 관련: 갈담초등학교-1209(2024.3.4.)

나. 각 프로그램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자료를 선정하고자 함

프로그램명		교재 교구명
돌봄	책놀이	행복한 논술(이태종 NIE논술연구소, 9,900원)
방과후 학교	컴퓨터	파워포인트 2016으로 작품만들기(마린박스, 12,000원)
		한글 2016으로 작품만들기(마린박스, 12,000원)
	피아노	동그라미 바이엘(음악세계, 7,000원)
	우쿨렐레	I DO 우쿨렐레(아름출판사, 7,000원)
	종이접기	어린이 종이접기 3급(정예술문화교육개발원, 8,000원)

갈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안전 번호	2024-7
----------	--------

제출일자: 2024. 3. 29.

제출자: 학 교 장

담당자: 박 미 나

1. 제안이유

- 가.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운영 변경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나. 학업중단숙려제 변경사항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인한 관련 내용 수정
- 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제15조 (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제2항 - 개인 교환학습의 국내 한정 사항 제4항2호 - 교외체험학습을 사전 허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 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 제5항 -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원칙 제6항 - 교외체험학습 사전 신청 기한, 방법, 사후제출 서류, 신청 예외사항 제7항 - 교외체험 실시 중 학생 안전 확인 방안 제10항 - 교외체험학습 실시 유의사항
제33조 (학업중단숙려제) 제1항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르는 내용으로 변경
제41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인해 삭제
제41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내용 변경
명칭 변경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붙임 갈담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1부. 끝.



갈담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1999.	3.	31
제1차 개정	2002.	4.	1
제2차 개정	2005.	4.	1
제3차 개정	2011.	4.	29
제4차 개정	2017.	4.	13
제5차 개정	2021.	2.	16
제6차 개정	2022.	10.	11
제7차 개정	2023.	12.	22
제8차 개정	2024.	4.	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갈담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갈담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65(갈담리 323-1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학년제) 초·중등교육법 제26조(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 (학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2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7. 학교의 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 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①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운영·수업일수·체험학습·고사

제10조 (교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① 초등학교의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이다.

제11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등) 초·중등교육법 제24조 2항, 시행령 제4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시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4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재취학·편입학·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다.

제15조 (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체험 학습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횡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개인 교환학습을 4주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교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고,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횡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단체 교환학습을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교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단,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횟수 상관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사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

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1.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2. 지역 내 자연재해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⑦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⑧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⑨ 체험학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본교 체험학습 계획에 따른다.

⑩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제16조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2항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고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①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입학(조기입학)·(취학)유예·(취학)면제. 재취학·편입학·전입학

제18조 (입학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제19조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는 자(입학할 학교 변경 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에 해당되는 자(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 ② 제1항 2호의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②항에 해당되는 자(조기입학 자)

제19조 (취학 유예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재취학,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21조 (전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①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 ② 1항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주민등록법」제30조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전출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전출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을 때에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⑥ 학교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한 학생이 전입학할 경우 2항에 준용하여 입학을 허락한다.

제22조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⑦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23조 (출결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⑥ 출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출석인정 및 출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수료 및 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5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6조 (조기진급.조기졸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6조

- ①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 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의 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8조 2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의 장 선정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 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9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8조 2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0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 구체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31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2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항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3조 (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방법(숙려기간, 참여횟수, 참여대상 및 참여불가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단, 평가 기간 제외)

제9장 수업료·입학금·기타 비용 징수

제34조 (수업료 등)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 4항

- ①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② 기타의 비용(현장학습비, 테마식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청소년단계 활동비)징수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학생생활지도

제35조 (학생포상)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36조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1항과 2항에 학생생활과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갈담초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

제37조 (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된다.
-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8조 (장애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9조 (학생자치활동)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자치활동 계획에 따른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0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의 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제41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 ① 본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42조 (학교 자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자치 조례

-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학교 자치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 ⑥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를 두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4조

- ① 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⑦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⑧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⑪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

- ① 아동 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인정 결석 학생(연속 10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5조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9조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7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①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 ①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0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8

-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51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학칙 8차 개정안은 개정일(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번호	2024-8
----------	--------

제출일자: 2024. 4. 1.
제 출 자: 학 교 장
담 당 자: 한 정 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의거 2024학년도 갈담 초등학교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차	326,658	295,089	31,569	10.7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정책사업	금회	누계
이전 수입	지방교육행정 기관이전수입	29,845	300,686	인적자원 운용	47	5,647
이전 수입	기타이전수입	0	10,877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50	111,639
자체 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10,471	기본적 교육활동	9,371	39,762
자체 수입	행정활동수입	400	700	선택적 교육활동	20,198	38,102
기타 수입	전년도이월금	1,324	3,924	교육활동 지원	3,712	13,922
합 계		31,569	326,658	학교 일반운영	△3,909	117,586
				학교 재무활동	△1,100	0
				합 계	31,569	326,658

3. 세부 사항

가. 세입 내역

- 1) 지방교육행정기간이전수입: 29,845천원
- 2) 행정활동수입: 400천원
 - (주요항목) 사용료, 자산수입
- 3) 기타수입: 1,324천원
 - (주요항목) 순세계잉여금(유, 초)

나. 세출 내역

- 1) 인적자원 운용: 47천원
 - (주요항목) 교원안심서비스
-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50천원
 - (주요항목)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교육복지사업운영비, 졸업앨범제작
- 3) 기본적 교육활동: 9,371천원
 - (주요항목) 유치원 교과활동, 행복한스포츠락, 섬진강학교특색교육활동
- 4) 선택적 교육활동: 20,198천원
 - (주요항목)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 5) 교육활동 지원: 3,712천원
 - (주요항목) 환경정리, 상담실운영비, 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학생안전교육
- 6) 학교 일반운영: △3,909천원
 - (주요항목) 병설유치원기본운영, 학교시설장비유지
- 7) 학교 재무활동: △1,100천원
 - (주요항목) 예비비(유, 초)

붙임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 1부. 끝.

2024 학년도

갈담초등학교 회계 세입 · 세출 예산서 (안)

(1차추경예산)

갈담초등학교

갈담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추경1회

예산안확정일자	2024-04-01	예산액	326,658,000
---------	------------	-----	-------------

2024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세입·세출 각각 295,089,000원"을 "세입·세출 각각 326,658,000원"으로 한다.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회계연도 : 2024
 예산구분 : 추경1회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1회	326,658		295,089		31,569		10.7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29,845	300,686	92	인적자원 운용	47	5,647	1.7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0,877	3.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50	111,639	34.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10,471	3.2	기본적 교육활동	9,371	39,762	12.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400	700	0.2	선택적 교육활동	20,198	38,102	11.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1,324	3,924	1.2	교육활동 지원	3,712	13,922	4.3
					학교 일반운영	-3,909	117,586	36
					학교 재무활동	-1,100	0	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1. 이전수입					311,563	281,718	29,845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300,686	270,841	29,845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300,686	270,841	29,845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00,686	270,841	29,845		
1. 학교운영비전입금					204,261	204,261	0		
2. 목적사업비전입금					96,425	66,580	29,845	(성립전_1추)원어민화상영어(방과후학교)운영 : 2,500,000원 * 1개교 = 2,500,000	
								(성립전_1추)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 14,098,000원 * 1개교 = 14,098,000	
								(성립전_1추)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법정부담금 : 1,100,000원 * 1개교 = 1,100,000	
								(성립전_1추)초등돌봄교실간식비 : 2,312,000원 * 1개교 = 2,312,000	
								(성립전_1추)행복한 스포츠·락(樂) 운영비 : 4,700,000원 * 1개교 = 4,700,000	
								흡연예방 금연실천학교 운영비 : 500,000원 * 1개교 = 500,000	
								(성립전_1추)임실교육협력지구 교육과정 운영지원금 : 1,200,000원 * 1개교 = 1,200,000	
								(성립전_1추)교육복지중점학교 운영비 : 2,000,000원 * 1개교 = 2,000,000	
								(성립전_1추)교원안심서비스 운영비 : 47,000원 * 1개교 = 47,000	
								(성립전_1추)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 1,388,000원 * 1개교 = 1,388,000	
2. 기타이전수입					10,877	10,877	0		
1.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0,877	10,877	0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0,877	10,877	0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0,877	10,877	0		
2. 자체수입					11,171	10,771	400		
1. 학부모부담수입					10,471	10,471	0		
1. 수익자부담수입					10,471	10,471	0		
1. 급식비					10,471	10,471	0		
1. 급식비					10,471	10,471	0		
2. 행정활동수입					700	300	400		
1. 사용료및수수료					100	0	100		
1. 사용료및수수료					100	0	100		
1. 사용료					100	0	100	사용료 : 100,000원*1교=	100,000

2024학년도 세입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과 목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원)	비고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비목					
				2. 자산수입	300	0	300		
				1. 자산매각대	300	0	300		
				1. 자산매각대	300	0	300	물품매각 : 300,000원*1개=	300,000
				3. 기타행정활동수입	300	300	0		
				1. 이자수입	300	300	0		
				1. 이자수입	300	300	0		
				3. 기타수입	3,924	2,600	1,324		
				1. 전년도이월금	3,924	2,600	1,324		
				1. 순세계잉여금	3,924	2,600	1,324		
				1. 순세계잉여금	3,924	2,600	1,324		
				1. 순세계잉여금	3,924	2,600	1,324	이월금(초) : 353,000원*1식=	353,000
								이월금(유) : 971,000원*1식=	971,000
				세입합계	326,658	295,089	31,569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인적자원 운용					5,647	5,600	47	
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5,647	5,600	47	
1. 교직원역량강화					3,500	3,500	0	
1. [초] 직무연수					1,000	1,000	0	
1. 일반수용비					1,000	1,000	0	
2. [초] 자율연수					2,500	2,500	0	
1. 일반수용비					2,500	2,500	0	
2. 교직원복지					2,147	2,100	47	
1. [초] 동호회지원					1,800	1,800	0	
1. 교직원복지비					1,800	1,800	0	
2. [초] 퇴임식, 스승의날행사					300	300	0	
1. 교직원복지비					300	300	0	
3. [초] 교원안심 서비스					47	0	47	
1. 일반수용비					47	0	47	(성립전_1추)교원안심서비스지원 : 47,000원 *1명= 47,00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1,639	108,389	3,250	
1. 급식 관리					66,477	66,477	0	
1. 학교급식운영					66,477	66,477	0	
1. [초] 급식재료구입비					38,146	38,146	0	
1. 급식용식재료비					38,146	38,146	0	
2. [초] 급식운영비					8,181	8,181	0	
1. 일반수용비					4,681	4,681	0	
2. 연료비					3,500	3,500	0	
3. [초] 급식기구확충비					16,500	16,500	0	
1. 일반수용비					1,400	0	1,400	전기공사 : 1,400,000원*1식= 1,400,000
2. 비품구입비					15,100	16,500	-1,400	급식용기구확충비 : -1,400,000원*1식= -1,400,000
4. [초] 영양교육					200	200	0	
1. 교육운영비					200	200	0	
5. [초] 급식차량운영비					3,450	3,45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1,000	1,000	0	
				2.일반수용비	1,716	1,716	0	
				3.연료비	734	734	0	
			2.보건관리		9,628	9,128	500	
			1.[국고]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1,898	1,398	500	
			1.[초]응급학생후송비		100	100	0	
				1.학생복지비	100	100	0	
			2.[초]학생건강검사		75	75	0	
				1.학생복지비	75	75	0	
			3.[초]보건실운영		1,223	1,223	0	
				1.일반수용비	200	200	0	
				2.교육운영비	423	423	0	
				3.학생복지비	600	600	0	
			4.[국고][초]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500	0	500	
				1.운영수당	200	0	200	강사비 : 100,000원*2회= 200,000
				2.교육운영비	250	0	250	교육용품구입 : 8,600원*10종= 86,000 운영용품구입 : 8,200원*10종*2회= 164,000
				3.목적사업업무추진비	50	0	50	협의회비 : 50,000원*1식= 50,000
			2.학교환경위생관리		7,730	7,730	0	
			1.[초]먹는물관리		2,050	2,050	0	
				1.일반수용비	2,050	2,050	0	
			2.[초]공기질측정		5,680	5,680	0	
				1.일반수용비	5,680	5,680	0	
			3.학생복지		35,534	32,784	2,750	
			1.교육복지우선		2,000	0	2,000	
			1.[초]교육복지사업 운영비		2,000	0	2,000	
				1.교육운영비	2,000	0	2,000	(성립전_1추)심리검사비 : 5,000원*20부= 100,000 (성립전_1추)심리상담비 : 92,500원*4회기*2회= 740,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성립전_1추)운영용품구입 : 10,000원*8종 *2회= 160,000
								(성립전_1추)사제멘토링활동비 : 62,500원 *16명= 1,000,000
			2. 학생복지운영		33,534	32,784	750	
			1. [초]졸업앨범제작		750	0	750	
				1. 학생복지비	750	0	750	졸업앨범제작 : 150,000원*5권= 750,000
			2. [초]학생교과서구입		6,633	6,633	0	
				1. 교육운영비	6,633	6,633	0	
			3. [초]통학차량(임차)운영		26,151	26,151	0	
				1.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0	3,000	0	
				2. 일반수용비	23,151	23,151	0	
			3. 기본적 교육활동		39,762	30,391	9,371	
			1. 교과 활동		27,162	23,691	3,471	
			1. 교과활동지원		1,200	1,200	0	
				1. [초]학습준비물구입	600	600	0	
				1. 교육운영비	600	600	0	
				2. [초]기초학력지도	600	600	0	
				1. 교육운영비	600	600	0	
			2. 과학 교과활동		1,400	1,400	0	
				1. [초]교과운영	1,400	1,400	0	
				1. 교육운영비	1,200	1,200	0	
				2. 비품구입비	200	200	0	
			3. 체육 교과활동		1,391	1,391	0	
				1. [초]교과운영	600	600	0	
				1. 교육운영비	600	600	0	
				2. [초]체육시설개방지원	791	791	0	
				1. 일반수용비	491	491	0	
				2. 비품구입비	300	300	0	
			4. 특수교육교과활동		2,900	2,90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초]교과운영		2,900	2,900	0	
				1.교육운영비	2,900	2,900	0	
		5.유치원	교과활동		20,271	16,800	3,471	
			1.[유]교과운영		20,271	16,800	3,471	
				1.운영수당	9,927	7,896	2,031	하모니자원봉사자활동비 : 8,460원*240일= 2,031,000
				2.교육운영비	9,444	8,004	1,440	간식비 : 3,000원*2명*12회= 72,000 현장학습 : 114,000원*12회= 1,368,000
				3.비품구입비	500	500	0	
				4.도서구입비	400	400	0	
		2.창의적 체험활동			12,600	6,700	5,900	
			1.자율활동		12,600	6,700	5,900	
			1.[초]학생회활동지원		1,500	1,500	0	
				1.교육운영비	1,000	1,000	0	
				2.학생복지비	500	500	0	
			2.[초]학급교육활동경비		1,800	1,800	0	
				1.교육운영비	1,800	1,800	0	
			3.[초]체육대회		500	500	0	
				1.교육운영비	500	500	0	
			4.[초]학교특색사업		2,900	2,900	0	
				1.운영수당	450	0	450	강사비 : 45,000원*10시간= 450,000
				2.교육운영비	2,450	2,900	-450	교사교육과정 : -90,000원*5학급= -450,000
			5.[초]행복한스포츠타		4,700	0	4,700	(성립전_1추)강사비 : 195,830원*3강좌*8월= 4,700,000
				1.운영수당	4,700	0	4,700	
			6.[초]심진강학교특색교육활동		1,200	0	1,200	(성립전_1추)강사비 : 150,000원*8월= 1,200,000
				1.운영수당	1,200	0	1,200	
		4.선택적 교육활동			38,102	17,904	20,198	
			1.방과후학교 운영		30,838	10,640	20,198	
				1.방과후학교운영	2,500	0	2,5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초]교과프로그램		2,500	0	2,500	
			1.교육운영비		2,500	0	2,500	(성립전_1추)화상강의료 : 220,000원*10명 = 2,200,000
								(성립전_1추)교재구입 : 15,000원*2권*10 명= 300,000
			2.돌봄교실운영		5,312	3,000	2,312	
			1.[초]돌봄교실운영		5,312	3,000	2,312	
			1.교육운영비		5,312	3,000	2,312	(성립전_1추)간식비 : 2,000원*17명*68일= 2,312,000
			3.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23,026	7,640	15,386	
			1.[유]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15,440	7,640	-1,200	
			1.기간제교원인건비		270	270	0	
			2.일반수용비		0	1,000	-1,000	통학택시 : -50,000원*20회= -1,000,000
			3.운영수당		5,470	5,670	-200	강사비 : -200,000원*1월= -200,000
			4.교육운영비		600	600	0	
			5.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100	100	0	
			2.[유]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16,586	0	16,586	
			1.기간제교원인건비		15,486	0	15,486	(성립전_1추)인건비 : 14,097,570원*1명 = 14,098,000 (성립전_1추)성과상여금 : 1,387,730원*1 명= 1,388,000
			2.기간제교원법정부담금		1,100	0	1,100	(성립전_1추)사대보험 : 1,099,500*1명= 1,100,000
			2.독서활동		7,264	7,264	0	
			1.독서활동운영		7,264	7,264	0	
			1.[초]도서구입		4,824	4,824	0	
			1.도서구입비		4,824	4,824	0	
			2.[초]도서관운영		2,440	2,440	0	
			1.일반수용비		900	900	0	
			2.교육운영비		1,540	1,540	0	
			5.교육활동 지원		13,922	10,210	3,712	
			1.교무업무 운영		6,690	3,690	3,000	
			1.교무학사운영		6,690	3,690	3,000	
			1.[초]교무학사운영		3,090	3,090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1. 운영수당	1,600	1,600	0	
				2. 교육운영비	1,490	1,490	0	
			2. [초]입학식 및 졸업식		600	600	0	
				1. 교육운영비	600	600	0	
			3. [초]환경정리		3,000	0	3,000	
				1. 일반수용비	1,500	0	1,500	환경정리용품구입 : 20,000원*5종*6학급*2회= 1,200,000
								청소용품구입 : 25,000원*6종*2회= 300,000
				2. 교육운영비	1,500	0	1,500	휴사랑교육용품구입 : 20,000원*25종*3회= 1,500,000
			2. 생활지도운영		712	0	712	
			1. 학생생활상담지도		200	0	200	
				1. [초]상담실운영비	200	0	200	
				1. 교육운영비	200	0	200	운영용품구입 : 20,000원*5종*2회= 200,000
			2. 학교폭력예방		500	0	500	
				1. [초]학교폭력관련연수지원	500	0	500	
				1. 운영수당	500	0	500	강사비 : 250,000원*2회= 500,000
			3. 학생안전교육		12	0	12	
				1. [초]안전교육	12	0	12	
				1. 교육운영비	12	0	12	안전체험비 : 2,000원*6명= 12,000
			3. 학습지원실 운영		6,520	6,520	0	
			1. 정보화실운영		6,520	6,520	0	
				1. [초]학교정보화지원	6,520	6,520	0	
				1. 교육운영비	4,320	4,320	0	
				2. 비품구입비	2,200	2,200	0	
			6. 학교 일반운영		117,586	121,495	-3,909	
			1. 학교기관 운영		41,442	42,642	-1,200	
			1. 부서기본운영		32,185	32,185	0	
				1. [초]교장실운영	5,945	5,945	0	
				1. 일반업무추진비	2,945	2,945	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2.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3,000	3,000	0	
			2. [초] 행정실운영		23,955	23,955	0	
			1. 일반수용비		4,745	4,745	0	
			2. 기타공공요금		170	170	0	
			3. 여비		14,040	14,040	0	
			4. 비품구입비		5,000	5,000	0	
			3. [초] 교무부운영		2,285	2,285	0	
			1. 일반수용비		500	500	0	
			2. 일반업무추진비		1,785	1,785	0	
			2. 병설유치원기본운영		9,257	10,457	-1,200	
			1. [유]유치원운영		9,257	10,457	-1,200	
			1. 일반수용비		3,381	4,581	-1,200	방역소독비 : -100,000원*5회= -500,000
								감염병예방관리 : -70,000원*10회= -700,000
			2. 전기요금		3,000	3,000	0	
			3. 연료비		1,956	1,956	0	
			4. 기타공공요금		120	120	0	
			5. 여비		600	600	0	
			6. 학생복지비		200	200	0	
			2. 시설 장비 유지		73,994	76,703	-2,709	
			1. 학교시설장비유지		73,994	76,703	-2,709	
			1. [초]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9,114	29,114	0	
			1. 전기요금		21,600	21,600	0	
			2. 상하수도료		2,400	2,400	0	
			3. 기타공공요금		5,114	5,114	0	
			2. [초]시설관리용역		8,052	8,052	0	
			1. 일반수용비		8,052	8,052	0	
			3. [초]시설일반관리		28,588	31,297	-2,709	
			1. 일반수용비		28,588	31,297	-2,709	소규모수선 : -677,250원*4회= -2,709,000

2024학년도 세출예산명세서

예산구분 : 추경1회

(단위 : 천원)

사업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원)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원가통계비목				
			4.[초]화장실관리		1,500	1,500	0	
			1.일반수용비		1,500	1,500	0	
			5.[초]당직관리		2,640	2,640	0	
			1.일반수용비		2,640	2,640	0	
			6.[초]청소원인건비		4,100	4,100	0	
			1.기간제근로자인건비		3,800	3,800	0	
			2.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300	300	0	
		3.학교운영 협력			2,150	2,150	0	
		1.학교운영위원회운영			700	700	0	
		1.[초]학교운영위원회운영			700	700	0	
		1.일반업무추진비			700	700	0	
		2.학부모협력			1,450	1,450	0	
		1.[초]학부모교육			1,450	1,450	0	
		1.일반수용비			1,000	1,000	0	
		2.일반업무추진비			450	450	0	
		7.학교 재무활동			0	1,100	-1,100	
		1.예비비			0	1,100	-1,100	
		1.예비비			0	1,100	-1,100	
		1.[초]예비비			0	1,000	-1,000	
		1.예비비			0	1,000	-1,000	예비비 : -1,000,000원*1식= -1,000,000
		2.[유]유치원예비비			0	100	-100	
		1.예비비			0	100	-100	예비비 : -100,000원*1식= -100,000
세출합계					326,658	295,089	31,569	

2023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안 건 번호	2024-9
-----------	--------

발의년월일: 2024. 4. 1.
제안자: 학교장
담당자: 한정선

1. 제안 사유

- 2023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평가 검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비고
460,625,000	460,625,000	460,429,600	456,505,380	3,924,220	

- 잉여금 처리 상황 (단위: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세계 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월	결산후 이월	소계
460,429,600	456,505,380	3,924,220	0	0	0	0	2,600,000	1,324,220	3,924,220

-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원, %)

세입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16,001,250	90.4
	기타이전수입	24,273,920	5.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3,598,840	3.0
	행정활동수입	3,268,650	0.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286,940	0.7
합계		460,429,600	100

세출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 운용	8,002,060	1.8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6,144,980	25.4
기본적 교육활동	64,269,760	14.1
선택적 교육활동	103,364,030	22.6
교육활동 지원	59,862,600	13.1
학교 일반운영	104,861,950	23.0
학교 재무활동	0	0
합계	456,505,380	100

붙임 2023학년도 갈담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

2023 학년도

갈담초등학교 결산서

갈담초등학교

2023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세계잉여금(A-B)	비고
460,625,000	460,625,000	460,429,600	456,505,380	3,924,220	

□ 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반환 확정액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명시	사고	계속비	소계		결산전 이월	결산 후 이월	소계
460,429,600	456,505,380	3,924,220	0	0	0	0	0	2,600,000	1,324,220	3,924,220

□ 세입 결산 내역

(단위 : 원)

장	관	결산액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16,001,250	90.4
	기타이전수입	24,273,920	5.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3,598,840	3.0
	행정활동수입	3,268,650	0.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3,286,940	0.7
합계		460,429,600	100

□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정책사업	결산액	구성비(%)
인적자원 운용	8,002,060	1.8

2023년도 학교회계 결산총괄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6,144,980	25.4
기본적 교육활동	64,269,760	14.1
선택적 교육활동	103,364,030	22.6
교육활동 지원	59,862,600	13.1
학교 일반운영	104,861,950	23.0
학교 재무활동	0	0.0
합계	456,505,380	100

2023년도 세입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장	관	항	목				
1. 이전수입				440,406,000	440,406,000	440,275,170	130,830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416,132,000	416,132,000	416,001,250	130,750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수입				416,132,000	416,132,000	416,001,250	130,750
1.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16,132,000	416,132,000	416,001,250	130,750
2. 기타이전수입				24,274,000	24,274,000	24,273,920	80
1. 학교회계간이전수입				12,274,000	12,274,000	12,273,920	80
1. 다른학교회계전입금				12,274,000	12,274,000	12,273,920	80
2. 기타공공이전수입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 기타공공지원금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2. 자체수입				16,931,000	16,931,000	16,867,490	63,510
1. 학부모부담수입				13,684,000	13,684,000	13,598,840	85,160
1. 수익자부담수입				13,684,000	13,684,000	13,598,840	85,160
1. 급식비				13,684,000	13,684,000	13,598,840	85,160
2. 행정활동수입				3,247,000	3,247,000	3,268,650	-21,650
1. 사용료및수수료				1,256,000	1,256,000	1,256,490	-490
1. 사용료및수수료				1,256,000	1,256,000	1,256,490	-490
2. 기타행정활동수입				1,991,000	1,991,000	2,012,160	-21,160
1. 이자수입				1,630,000	1,630,000	1,630,390	-390
2. 기타행정활동수입				361,000	361,000	381,770	-20,770
3. 기타수입				3,288,000	3,288,000	3,286,940	1,060
1. 전년도이월금				3,288,000	3,288,000	3,286,940	1,060
1. 순세계잉여금				3,288,000	3,288,000	3,286,940	1,060
1. 순세계잉여금				3,288,000	3,288,000	3,286,940	1,060
세입합계				460,625,000	460,625,000	460,429,600	195,400

2023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 인적자원 운용				8,540,000	8,540,000	8,002,060	537,940
1.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4,214,000	4,214,000	4,157,580	56,420
1. 교직원역량강화				2,339,000	2,339,000	2,288,820	50,180
1. 자율연수				2,339,000	2,339,000	2,288,820	50,180
2. 교직원복지				1,875,000	1,875,000	1,868,760	6,240
1. 동호회지원				1,375,000	1,375,000	1,368,760	6,240
2. 교원안심서비스				500,000	500,000	500,000	0
2. 기타 교직원보수				4,326,000	4,326,000	3,844,480	481,520
1. 교직원대체인건비				4,326,000	4,326,000	3,844,480	481,520
1. 직원대체인건비				3,000,000	3,000,000	2,521,500	478,500
2. 급식종사자 대체 인건비				1,326,000	1,326,000	1,322,980	3,020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16,366,000	116,366,000	116,144,980	221,020
1. 급식 관리				60,347,000	60,347,000	60,337,010	9,990
1. 학교급식운영				60,347,000	60,347,000	60,337,010	9,990
1. 급식재료구입비				48,873,000	48,873,000	48,872,140	860
2. 급식운영비				7,824,000	7,824,000	7,821,700	2,300
3. 영양교육				200,000	200,000	193,180	6,820
4. 학교급식운반차량운영비				2,450,000	2,450,000	2,449,990	10
5. 급식실운영				1,000,000	1,000,000	1,000,000	0
2. 보건관리				14,779,000	14,779,000	14,575,030	203,970
1.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7,332,000	7,332,000	7,128,030	203,970
1. 학생건강검사				137,000	137,000	122,200	14,800
2. 보건실운영				3,470,000	3,470,000	3,469,730	270
3.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500,000	500,000	500,000	0
4. 감염병관리				3,100,000	3,100,000	2,911,100	188,900
5. 조리원폐암검진비				125,000	125,000	125,000	0
2. 학교환경위생관리				7,447,000	7,447,000	7,447,000	0
1. 먹는물관리				1,767,000	1,767,000	1,815,000	-48,000

2023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 공기질측정	5,680,000	5,680,000	5,632,000	48,000
		3. 학생복지		41,240,000	41,240,000	41,232,940	7,060
		1. 교육복지우선		2,200,000	2,200,000	2,200,000	0
			1. 교육복지사업 운영비	1,000,000	1,000,000	1,000,000	0
			2. 에듀페이	1,200,000	1,200,000	1,200,000	0
		2. 학생복지운영		39,040,000	39,040,000	39,032,940	7,060
			1. 졸업앨범제작	1,034,000	1,034,000	1,033,500	500
			2. 학생교과서구입	7,199,000	7,199,000	7,190,480	8,520
			3. 통학차량(임차)운영	14,535,000	14,535,000	14,865,620	-330,620
			4. 통학택시운영	16,272,000	16,272,000	15,943,340	328,660
		3. 기본적 교육활동		64,739,000	64,739,000	64,269,760	469,240
		1. 교과 활동		34,907,000	34,907,000	34,451,180	455,820
			1. 교과활동지원	4,800,000	4,800,000	4,800,000	0
			1. 학습준비물구입	800,000	800,000	800,730	-730
			2. 교수학습자료구입	500,000	500,000	500,000	0
			3. 두드림학교운영	2,500,000	2,500,000	2,499,270	730
			4. 기초학력교재(수자원)	1,000,000	1,000,000	1,000,000	0
			2. 과학 교과활동	1,600,000	1,600,000	1,598,480	1,520
			1. 교과운영	1,600,000	1,600,000	1,598,480	1,520
			3. 체육 교과활동	1,690,000	1,690,000	1,689,090	910
			1. 교과운영	600,000	600,000	599,690	310
			2. 스포츠클럽운영	700,000	700,000	700,000	0
			3. 체육시설개방지원	390,000	390,000	389,400	600
			4. 외국어 교과활동	1,560,000	1,560,000	1,560,000	0
			1. 교과운영	200,000	200,000	200,000	0
			2. 원어민원격화상강의	1,360,000	1,360,000	1,360,000	0
			5. 특수교육교과활동	2,900,000	2,900,000	2,894,200	5,800
			1. 교과운영	2,700,000	2,700,000	2,717,000	-17,000

2023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 학습준비물지원	200,000	200,000	177,200	22,800
		6. 유치원 교과활동		22,357,000	22,357,000	21,909,410	447,590
			1. 교과운영	18,136,000	18,136,000	17,681,140	454,860
			2. 유아학비지원(교육과정)	2,021,000	2,021,000	2,028,270	-7,270
			3. 다꿈사랑방학교	2,200,000	2,200,000	2,200,000	0
		2. 창의적 체험활동		29,832,000	29,832,000	29,818,580	13,420
			1. 자율활동	17,832,000	17,832,000	17,818,580	13,420
			1. 학생회활동지원	1,500,000	1,500,000	1,500,000	0
			2. 학급교육활동경비	2,100,000	2,100,000	2,100,000	0
			3. 체육대회	500,000	500,000	487,290	12,710
			4. 학교특색사업	6,032,000	6,032,000	6,031,290	710
			5. 마을연계교육과정(교육청)	1,500,000	1,500,000	1,500,000	0
			6. 행복한스포츠클	5,000,000	5,000,000	5,000,000	0
			7. 학교특색교육(교육청)	1,200,000	1,200,000	1,200,000	0
			2. 현장체험학습활동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1,000,000	1,000,000	1,000,000	0
			2. 현장체험학습(수자원)	11,000,000	11,000,000	11,000,000	0
		4. 선택적 교육활동		103,639,000	103,639,000	103,364,030	274,970
			1. 방과후학교 운영	93,159,000	93,159,000	92,884,120	274,880
			1. 방과후학교운영	19,280,000	19,280,000	19,254,810	25,190
			1. 방과후학교운영(지자체)	7,280,000	7,280,000	7,280,000	0
			2. 방과후학교운영(교육청)	12,000,000	12,000,000	11,974,810	25,190
			2. 돌봄교실운영	26,906,000	26,906,000	26,843,110	62,890
			1. 돌봄교실운영	230,000	230,000	229,200	800
			2. 돌봄교실운영(지자체)	5,500,000	5,500,000	5,500,000	0
			3. 돌봄교실운영(교육청)	21,176,000	21,176,000	21,113,910	62,090
			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46,973,000	46,973,000	46,786,200	186,800
			1.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과정 운영	5,220,000	5,220,000	5,220,000	0

2023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인건비	35,436,000	35,436,000	35,210,490	225,510
			3. 유아학비지원(방과후과정)	1,200,000	1,200,000	1,183,100	16,900
			4. 방학중 혼합급식비	1,906,000	1,906,000	1,882,010	23,990
			5. 방학중 통학비	231,000	231,000	310,600	-79,600
			6. 유치원방과후과정비	2,980,000	2,980,000	2,980,000	0
		2. 기타 선택적 교육활동		3,000,000	3,000,000	3,000,000	0
		1. 다문화교육운영		3,000,000	3,000,000	3,000,000	0
		1. 다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3,000,000	3,000,000	3,000,000	0
		3. 독서활동		7,480,000	7,480,000	7,479,910	90
		1. 독서활동운영		7,480,000	7,480,000	7,479,910	90
		1. 도서구입		5,400,000	5,400,000	5,400,000	0
		2. 도서관운영		2,080,000	2,080,000	2,079,910	90
		5. 교육활동 지원		60,297,000	60,297,000	59,862,600	434,400
		1. 교무업무 운영		9,232,000	9,232,000	9,071,800	160,200
		1. 교무학사운영		9,232,000	9,232,000	9,071,800	160,200
		1. 교무학사운영		5,609,000	5,609,000	5,481,970	127,030
		2. 입학식 및 졸업식		750,000	750,000	717,800	32,200
		3. 환경정리		2,873,000	2,873,000	2,872,030	970
		2. 학습지원실 운영		12,470,000	12,470,000	12,250,980	219,020
		1. 정보화실운영		12,470,000	12,470,000	12,250,980	219,020
		1. 학교정보화지원		12,470,000	12,470,000	12,250,980	219,020
		3. 교육여건 개선		36,600,000	36,600,000	36,545,000	55,000
		1. 교육환경개선		36,600,000	36,600,000	36,545,000	55,000
		1. 교실환경개선		6,600,000	6,600,000	6,545,000	55,000
		2. 교수학습교구지원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3. 생태환경학습장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4. 생활지도운영		1,995,000	1,995,000	1,994,820	180
		1. 학생생활상담지도		1,995,000	1,995,000	1,994,820	180

2023년도 세출결산서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집행년월 : 2024년 03월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A)	예산현액 (B)	결산액 (C)	차액 (B-C)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1. 상담실운영비	1,995,000	1,995,000	1,994,820	180
6. 학교 일반운영				107,044,000	107,044,000	104,861,950	2,182,050
1. 시설 장비 유지				66,212,000	66,212,000	66,181,150	30,850
1. 학교시설장비유지				66,212,000	66,212,000	66,181,150	30,850
1.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9,640,000	29,640,000	29,257,990	382,010
2. 연료비				720,000	720,000	0	720,000
3. 시설관리용역				6,412,000	6,412,000	6,224,000	188,000
4. 시설일반관리				23,797,000	23,797,000	25,057,340	-1,260,340
5. 당직관리				2,640,000	2,640,000	2,640,000	0
6. 청소원인건비				3,003,000	3,003,000	3,001,820	1,180
2. 학교운영 협력				2,150,000	2,150,000	2,145,140	4,86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700,000	700,000	698,440	1,560
1. 학교운영위원회운영				700,000	700,000	698,440	1,560
2. 학부모협력				1,450,000	1,450,000	1,446,700	3,300
1. 학부모교육				1,450,000	1,450,000	1,446,700	3,300
3. 학교기관 운영				38,682,000	38,682,000	36,535,660	2,146,340
1. 부서기본운영				27,191,000	27,191,000	25,481,500	1,709,500
1. 교장실운영				9,325,000	9,325,000	8,571,520	753,480
2. 행정실운영				17,866,000	17,866,000	16,909,980	956,020
2. 병설유치원기본운영				11,491,000	11,491,000	11,054,160	436,840
1. 유치원운영				11,291,000	11,291,000	10,854,160	436,840
2. 유치원 운영				200,000	200,000	200,000	0
세출합계				460,625,000	460,625,000	456,505,380	4,119,620

2023년도 불용사유별 현황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 내역							불용비(%)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보유액)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계	
교직원대체인건비	4,326,000	481,520	481,520	0	0	0	0	0	481,520	11.7
교직원역량강화	2,339,000	50,180	50,180	0	0	0	0	0	50,180	1.2
교직원복지	1,875,000	6,240	6,240	0	0	0	0	0	6,240	0.2
학교급식운영	60,347,000	9,990	9,990	0	0	0	0	0	9,990	0.2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7,332,000	203,970	203,970	0	0	0	0	0	203,970	5.0
학교환경위생관리	7,447,000	0	0	0	0	0	0	0	0	0.0
교육복지우선	2,200,000	0	0	0	0	0	0	0	0	0.0
학생복지운영	39,040,000	7,060	7,060	0	0	0	0	0	7,060	0.2
교과활동지원	4,800,000	0	0	0	0	0	0	0	0	0.0
과학 교과활동	1,600,000	1,520	1,520	0	0	0	0	0	1,520	0.0
체육 교과활동	1,690,000	910	910	0	0	0	0	0	910	0.0
외국어 교과활동	1,560,000	0	0	0	0	0	0	0	0	0.0
특수교육교과활동	2,900,000	5,800	5,800	0	0	0	0	0	5,800	0.1
유치원 교과활동	22,357,000	447,590	447,590	0	0	0	0	0	447,590	10.9
자율활동	17,832,000	13,420	13,420	0	0	0	0	0	13,420	0.3
현장체험학습활동	12,000,000	0	0	0	0	0	0	0	0	0.0

2023년도 불용사유별 현황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 내역							불용비(%)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보유액)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계	
방과후학교운영	19,280,000	25,190	25,190	0	0	0	0	0	25,190	0.6
돌봄교실운영	26,906,000	62,890	62,890	0	0	0	0	0	62,890	1.5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46,973,000	186,800	186,800	0	0	0	0	0	186,800	4.5
독서활동운영	7,480,000	90	90	0	0	0	0	0	90	0.0
다문화교육운영	3,000,000	0	0	0	0	0	0	0	0	0.0
교무학사운영	9,232,000	160,200	160,200	0	0	0	0	0	160,200	3.9
학생생활상담지도	1,995,000	180	180	0	0	0	0	0	180	0.0
학교폭력예방	0	0	0	0	0	0	0	0	0	0.0
정보화실운영	12,470,000	219,020	219,020	0	0	0	0	0	219,020	5.3
교육환경개선	36,600,000	55,000	55,000	0	0	0	0	0	55,000	1.3
부서기본운영	27,191,000	1,709,500	1,709,500	0	0	0	0	0	1,709,500	41.5
병설유치원기본운영	11,491,000	436,840	436,840	0	0	0	0	0	436,840	10.6
학교시설장비유지	66,212,000	30,850	30,850	0	0	0	0	0	30,850	0.7
학교운영위원회운영	700,000	1,560	1,560	0	0	0	0	0	1,560	0.0
학부모협력	1,450,000	3,300	3,300	0	0	0	0	0	3,300	0.1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0

2023년도 불용사유별 현황

학 교 명 : 갈담초등학교

(단위 : 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원인별 내역							불용비(%)
			예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보유액)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계	
합계	460,625,000	4,119,620	4,119,620	0	0	0	0	0	4,119,620	100.0

2023학년도 갈담초등학교 발전기금 결산(안)

안 건 번호	2024-10
-----------	---------

발의년월일: 2024. 4. 1.
제안자: 위원장
담당자: 김수정

1. 제안 사유

- 2023학년도 갈담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을 통해 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의 타당성·합리성을 평가·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원)

세입액	세출액	잔액	비고
201,470	0	201,470	

- 세입 결산 내역 (단위: 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계
2023학년도 학생장학금	201,470	0	201,470
합 계	201,470	0	201,470

- 세출 결산 내역 (단위: 원, %)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액
2023학년도 학생장학금	201,470	0	201,470
합 계	201,470	0	201,470

붙임 2023회계년도 발전기금 결산 보고서 1부. 끝.

2023 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

갈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1.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가. 세입액 :	201,470 원
나. 세출액 :	0 원
다. 잔 액 :	201,470 원

2. 세입 결산 명세 : "별첨1"과 같음

3. 세출 결산 명세(사업내용) : "별첨2"과 같음

4. 기타 : "별첨3"과 같음

※붙임서류

1. 결산의 개황(概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및 학교발전기금출납부 사본 등)
3. 예탁금잔액증명서

<별첨1>

2. 세입 결산 명세

(단위 : 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 기타수입	접수액	계
학생장학금	201,470	0	201,470
합 계	201,470	0	201,470

<별첨2>

3. 세출 결산 명세(사업내용)

(단위 : 원)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 액
학생장학금	201,470	0	201,470
합 계	201,470	0	201,470

<별첨3>

4. 현금외 기탁내역

(단위 : 원)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탁자	기탁내역 (재산·물품명 등)	수량	단위	사용용도